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2026. 2.

내 용

1 동포방문(C-3-8) 사증
2 방문취업(H-2) 사증
3 방문취업(H-2) 체류관리
4 재외동포(F-4) 사증·체류관리
5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체류관리
6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증 · 체류관리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1

1. 동포방문(C-3-8) 자격 제도 ····· 1

2. 방문취업(H-2) 자격 제도 ····· 1

3.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제도 ····· 2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제도 ····· 2

Ⅱ. 제도별 세부절차 ····· 3

1.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3

2. 동포방문사증(C-3-8) 발급 절차 ····· 3

3. 방문취업제(H-2) 체류관리 세부절차 ····· 4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8

5.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세부절차 ····· 13

6. 외국국적동포 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증·체류 세부절차 ··· 23

Ⅲ. 기타 참고사항 ····· 25

1. 각종 문의 및 상담 ····· 25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 25

【별첨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 26

【별첨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 31

【별첨3】 방문취업제(H-2) 취업 활동범위 ····· 34

【별첨4】 건강상태 확인서 ····· 45

【별첨5】 건강진단서 ····· 46

【별첨6】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 47

【별첨7】 법무부 고시 제2026 - 35호(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48

【별첨8-1~3】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 56~58

【별첨9】 영주(F-5-14) 부여 자격 종목 및 등급 ····· 59

【별첨10】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 61

목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

2. 방문취업제(H-2)

□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라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 중단

○ '26. 2. 12.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여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합니다.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다만, 기존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동포에게는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 목적)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

○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목차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별첨 3> 참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 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제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자격 부여 제도

□ 외국국적동포 영주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동포의 국내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을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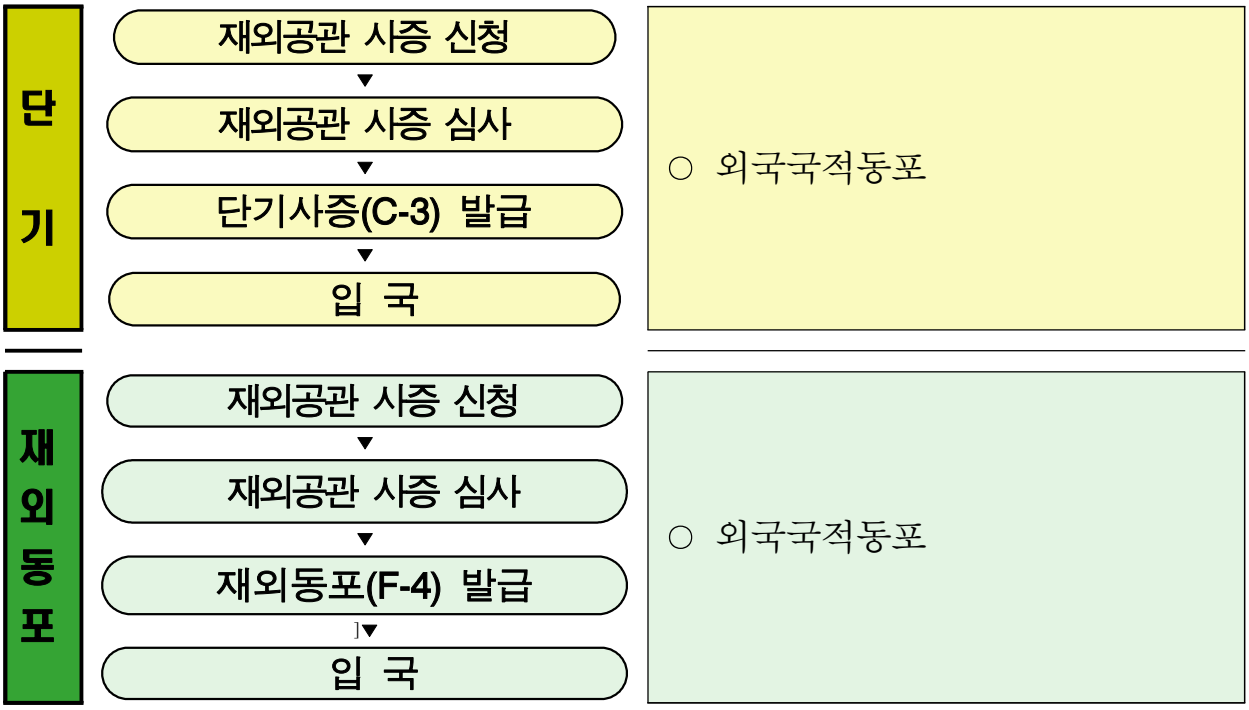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Ⅱ 제도별 세부절차

1.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 절차 흐름도



2.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절차

동포방문(C-3-8) 자격 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급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 가능

나.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다. 사증발급 내용

○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일) 복수사증

※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 가능

3. 방문취업제 체류관리 절차

'26. 2. 12.자로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26. 2. 12. 이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 4>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종전,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는 <별첨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 【Hi-korea】 >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목차

□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자격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 6년 이내 연장 가능)

○ (건강상태에 따른 처리기준) 결핵(결핵의심 포함)등 진단을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받습니다.

○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부여

□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공통 제출서류**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③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목차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대 상	제출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4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4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다.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CIS 지역 국가 동포가 과거에 동포 사증(C-3-8, H-2, F-4)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포 입증자료 제출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함

-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재외동포(F-4-41, F-4-42)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함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별첨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별첨 2)

* **(조기적응프로그램)**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

-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제출 유예를 허용

※ **(이수 면제대상)**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라.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과 동일함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별첨2)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별첨7 참조)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국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목차

벌금 합산액의 700만 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범칙금 합산액이 700만 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범칙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다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확인되는 경우(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에는 자격부여 제한 기간을 1년으로 감경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마. 재외동포 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동포가 과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일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으로 체류하며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동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거소신고증, 단순노무 업종 취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1회 부여 기간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부여합니다.

5.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라 한다)

○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도 인정

-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주택 등 신청인 또는 소득주체의 자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정

○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 연간소득 심사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1)]

- 예외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 자산의 기준 :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1)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함

목차

○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면제 대상(생계유지 능력)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F-5-6) 중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완화 대상(생계유지 능력)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 모두 졸업하거나 국내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일정 기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 GNI 80% 이상인 경우 인정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확인되는 경우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 면제 대상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6)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F-5-7)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14)

-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18조의4에 따라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됨

※ 본 매뉴얼의 영주(F-5)의 "품행단정" 요건 참조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공통)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세부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대 상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F-5-7)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단, 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

추가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1.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체류자격 약호 : F-5-14)

○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별첨 18)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다. 영주자격 상실 및 취소 사유

1 상실사유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가능

-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항공기, 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목차

② 취소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바)「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 적용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20. 9. 20.까지 발급받아야 함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단,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6.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증 · 체류 세부절차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동반(F-3) 및 방문동거(F-1)에 관한 사증 발급 및 체류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자격 기본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기본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부모)

※ 기존에 영주(F-5-7)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하던 방문동거(F-1-72)는 폐지하고, 영주(F-5-7) 신청자가 가족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주(F-5-7) 신청자가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후 가족에게 동반(F-3) 자격 부여

다.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여권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목차

라.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외국인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기간 연장

○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자격 변경

○ 대상 :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Ⅲ 기타 참고사항

1. 각종 문의 및 상담

가. 사증, 출입국, 체류절차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별첨 10>

나. 취업알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다. 동포 취업교육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 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전방문예약제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목차

별첨 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거소)외국인

* 면제대상 포함

※ 사증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과거체류자 등은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2]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3]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같은 법 제6호제1항제2호[4]에 해당하는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F-4)

○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영 주(F-5)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2)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4)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목차

○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라.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1] 권한 있는 기관[2]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단,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등 자국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공관은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인증 필요)

② 발급대상 국가 내 범죄경력 확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③ 기타

* (캐나다) 캐나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이 발급하는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s, CRC)* 로 확인

* CRC는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와 지문을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가 있으나,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는 신원확인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지문 제출 후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만 인정**

2. 인증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5]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

3.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원칙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단,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①번역본, ②번역자 확인서(신청인 본인 불가) 및 ③ 번역자 신분증 사본으로 '공증된 번역본' 대신 제출 가능

마.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영주(F-5)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5) 정식 협약명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문서 발행국이 자국문서로 확인하면 협약 가입국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해당 문서를 자국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약임

○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사.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4. 6월 기준)

지역	국가 / 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니우에,마샬군도,모리셔스,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고, 향후 가입국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별첨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동 기준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시 제출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적용됨 (영주(F-5) 자격변경시 제외)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6]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7]

6)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기준 적용)

7) 전체 교육부 한국교육원 변경 (19개국 43개원, 체류관리과-1499, 2022.02.17.)

목차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면제대상 포함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방문취업(H-2) 체류허가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 재외공관에 한국어 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 (H-2)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 ‘19. 9. 2. 이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재외동포(F-4)

○ 만 13세 이하인 사람

○ '19. 9. 2.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라. 처리 기준

○ 사증발급 시

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제출(면제자 포함)	**한국어능력 미제출**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발급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제출(면제자 포함)	**한국어능력 미제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2년** 부여

목차

별첨 3	방문취업제(H-2) 취업 활동범위

가.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나. 지정 방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나열**(포지티브) 방식**

○ **서비스업*** :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 「서비스업 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라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7.1.)에서 16개 대분류(E, G~U)를 말함

다. 활동범위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2)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 허용**

☞ 농업(소분류 3개), 임업(세세분류 4개), 어업(세분류 1개, 세세분류 1개), 광업(중분류 3개), 제조업(全 업종, 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뿌리사업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건설업(全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 **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3)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허용**

※ 단,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표준직업분류표」 산업분류체계는 대분류(알파벳 코드) → 중분류(2자리코드) → 소분류(3자리코드) → 세분류(4자리코드) → 세세분류(5자리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되거나 제외됨**

(예시①) 소분류 업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이므로, 하위 세분류 업종인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업(0122) 등도 허용되며, **하위 세세분류 업종**인 '젖소 사육업(01211), '육우 사육업')01212) 등도 **모두 허용**

(예시②) 중분류 업종인 '수상 운송업'(50)이 허용 제외업종이므로, 하위 소분류 업종인 '해상 운송업'(501)이나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뿐만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 제외**됨

라. 활동범위 세부내용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허용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u>허용</u>

허 용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① 작물 재배업(011)			**1. 업종 설명** (소분류)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2. 하위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0112),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 기타 작물 재배업(0114), 시설작물 재배업(0115)의 5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② 축산업(012)			**1. 업종 설명** (소분류) 식용, 관상용, 반려용·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우유, 모피, 계란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위 업종** 소 사육업(0121), 양돈업(012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0123), 기타 축산업(0129)의 4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table>
<tr><th colspan="5">허 용 업 종</th><th rowspan="2">상 세 설 명</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소분류</th><th>세분류</th><th>세세분류</th></tr>
<tr><td rowspan="6"></td><td rowspan="2"></td><td>③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td><td colspan="3">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4">☞ 농업(01)의 하위 소분류 업종 중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td></tr>
<tr><td rowspan="4">02. 임업
(소분류 020. 입업*)
* 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체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td><td>0201. 영림업</td><td>④ 입업용 종묘 생산업(02011)</td><td>1. 업종 설명 (소분류)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td></tr>
<tr><td></td><td>⑤ 육림업(02012)</td><td>1. 업종 설명 (소분류)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td></tr>
<tr><td>0202. 벌목업</td><td>⑥ 벌목업(02020)</td><td>1. 업종 설명 (소분류)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td></tr>
<tr><td>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td><td>⑦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td><td>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td></tr>
<tr><td colspan="3">☞ 소분류 임업(020)의 하위 세분류 업종 중 '임산물 채취업'(0203)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td></tr>
<tr><td>03. 어업</td><td>031. 어로어업</td><td>0311. 해수면 어업</td><td>⑧ 연근해어업(03112)</td><td>1. 업종 설명 (세세분류)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td></tr>
</table>

<table>
<tr><th colspan="4">허 용 업 종</th><th rowspan="2">상 세 설 명</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소분류</th><th>세분류</th><th>세세분류</th></tr>
<tr><td></td><td></td><td>032.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td><td>⑨ 양식어업(0321)</td><td colspan="2">1. 업종 설명 (세분류)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해수면 양식 어업(03211), 내수면 양식 어업(03212)</td></tr>
<tr><td></td><td></td><td colspan="4">☞ 어업(03)의 하위 업종 중 '원양 어업'(03111),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는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td></tr>
<tr><td rowspan="4">B.
광업
(05~08)</td><td>⑩ 금속광업(06)</td><td colspan="4">1. 업종 설명 (중분류)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속광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된다. 우라늄 및 토륨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철 광업(061), 비광철금속 광업(0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⑪ 비금속광물 공업; 연료용 제외(07)</td><td colspan="4">1. 업종 설명 (소분류)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토사석 광업(071),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⑫ 광업 지원 서비스업(08)</td><td colspan="4">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수리・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의 1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4">☞ 대분류 B의 하위 중분류 업종 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허 용 업 종</th><th rowspan="2">상 세 설 명</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소분류</th><th>세분류</th><th>세세분류</th></tr>
<tr><td colspan="3">⑬ C. 제조업
(중분류 10~34)
※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업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중견기업(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정비계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td><td colspan="2">1. 업종 설명 (대분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2. 하위 업종
제조업(대분류 C)의 하위 중분류(10~34) 및 그의 하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 향후 「①뿌리업종이면서, ②본사 또는 지사가 비수도권에 소재(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도 지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지사는 신청 가능)한 ③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허용 예정(「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td></tr>
<tr><td colspan="5">☞ 대분류 D (중분류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전 업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td></tr>
<tr><td colspan="3">⑭ F. 건설업
(중분류 41~42)
※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td><td colspan="2">1. 업종 설명 (대분류)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하위 업종
건설업(대분류 F)의 하위 중분류(41~42) 및 그의 하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td></tr>
</table>

2.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

<table>
<tr><th colspan="5">제 외 업 종</th><th rowspan="2">상 세 설 명</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소분류</th><th>세분류</th><th>세세분류</th></tr>
<tr><td rowspan="3">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td><td>① 수도업
(36)</td><td colspan="3">1. 업종 설명 (중분류)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수도업(360)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②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td><td colspan="3">1. 업종 설명 (중분류)
오염된 건물,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4">☞ 대분류 E의 하위 업종 중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td></tr>
<tr><td rowspan="3">G.
도매 및 소매업
(45~47)</td><td>③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td><td colspan="3">1. 업종 설명 (중분류)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453)의 3개 소분류 업종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4">☞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4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td></tr>
<tr><td rowspan="2">H.
운수 및 창고업
(49~52)</td><td>④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td><td colspan="3">1. 업종 설명 (소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 천 연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 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491~495)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4">☞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한다.
(1) 육상 여객 운송업(492)
(2)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td></tr>
</table>

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⑤ 수상 운송업(50)	**1. 업종 설명** (중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해상 운송업(5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⑥ 항공 운송업(51)	**1. 업종 설명** (중분류)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항공 여객 운송업(511), 항공 화물 운송업(5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⑦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1. 업종 설명** (중분류)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보관 및 창고업(521),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5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 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 **대분류 I(숙박 및 음식점업)(55~56)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J. 정보 통신업 (58~63)	⑧ 출판업(58)	**1. 업종 설명** (중분류)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 하위 업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⑨ 우편 및 통신업 (61)	**1. 업종 설명** (중분류)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공영 우편업(611)과 전기통신업(6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⑩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1. 업종 설명** (중분류)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⑪ 정보서비스업(63)	**1. 업종 설명** (중분류)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과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K. 금융 및 보험업 (64~66)	**⑫ 금융업 (64)**	**1. 업종 설명** (중분류)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은행 및 저축기관(64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642), 기타 금융업(649)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⑬ 보험업(65)	**1. 업종 설명** (중분류)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보험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보험업(651), 재보험업(652), 공제업(65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⑭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1. 업종 설명** (중분류)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L. 부동산업(68)	⑮ 부동산업(68)	**1. 업종 설명** (중분류)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2. 하위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⑯ 연구개발업(70)	**1. 업종 설명** (중분류)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⑰ 전문 서비스업(71)	**1. 업종 설명** (중분류)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2. 하위 업종**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715), 기타 전문서비스업(716)의 6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⑱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1. 업종 설명** (중분류) 건축 및 조경 설계.감리 서비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측량, 지질조사, 지도 제작 등의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조사;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분석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 하위 업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⑲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1. 업종 설명** (중분류)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하위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⑳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1. 업종 설명** (소분류)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 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 관리 아래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특정 인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고용 알선업(7511), 인력 공급업(751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 중분류 75의 하위 업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분류 N의 하위 업종 중 **'임대업; 부동산 제외'(76)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㉑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 업종 설명** (대분류)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2. 하위 업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42), 외무 및 국방 행정(843),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844), 사회보장 행정(845)의 5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p. 교육 서비스업(85)	㉒ 교육 서비스업(85)	**1. 업종 설명** (중분류)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 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2. 하위 업종** 초등 교육기관(851), 중등 교육기관(852), 고등 교육기관(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의 7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U. 국제 및 외국기관(99)	㉓ 국제 및 외 국 기 관(99)	**1. 업종 설명** (대분류)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 대사관 및 기타 외국 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국제 및 외국기관(990)의 1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대분류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대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대분류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의】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은 가능업종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한 경우에 한하며**,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세분류 이하 업종은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

별첨 4

건강상태 확인서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국 적	4) 성 별	5) 여권번호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아니오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목차

별첨 5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건 강 진 단 서

제 호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 진 (3㎝× 4㎝)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교정)청력	좌 : ()
	우 : ()	(색 각)			우 : ()
결 핵		정신질환			
매 독		간염(HBs Ag)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별첨 6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1. 피보증인(소속직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한자()
생년월일		성 별	
직 위		학 력	
재직기간		전화번호	
거주국 주소			

2. 신원보증인(기업대표)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체류자격	
회 사 명		자본금	
직원 수		전화번호	
회사 소재지			

3. 보증내용

○ 신원보증인은 위 피보증인(소속 직원)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 하

목차

별첨 7 | 법무부 고시 제2026 － 3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6 - 35호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18. 3.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6. 2. 12.부터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1) 이삿짐 운반원 (9211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 이삿짐 운반원
	(2) 우편 집배원 (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된 주소지에 배달한다. 【직업 예시】 • 우체부 • 우편 배달부
	(3) 택배원 (92220)	고객이 주문·의뢰한 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송지)를 통해 배달한다. 주로 도시 간 배송화물을 동시에 여러 개 취급하며, 터미널이나 지점으로부터 최종 배송지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전달한다. 【직업 예시】 • 택배 기사 • 택배 배달원
	(4) 늘찬배달원 (92230)	고객이 주문·의뢰한 소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송지)를 거치지 않고 수령자에게 바로 배달한다. 주로 도시 내 배송화물을 취급하며, 주문·의뢰한 곳에서 소화물을 바로 수집하여 전달한다. 【직업 예시】 • 퀵서비스 배달원 •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5) 식음료 정기배달원 (92241)	우유, 녹즙, 발효유, 과일 등 식음료를 약정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달한다. 【직업 예시】 • 우유 배달원 • 녹즙 배달원 • 샐러드 배달원 • 식단 정기배송원 【제외】 • 우유 방문 판매원(53210) • 야쿠르트 노점 판매원(53220)
	(6) 신문 정기배달원 (92242)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고, 신문대금을 수납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신문 배달원 【제외】 • 신문가두 판매원(53220)
	(7) 그 외 정기배달원 (9224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 학습지 정기배송원 • 도서 정기배송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8) **음식점 배달원** (92291)	음식점에 소속되어 완성된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한다. 음식 배달을 위해 포장용기나 식기를 준비하거나, 배달장소에 가서 음식 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등 음식 배달을 하기위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직업 예시】 • 중국집 배달원
	(9) **그 외 배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 마트 배달원 • 백화점 배달원 • 세탁소 배달원 • 빨래 수거원 • 지하철 배달원 • 카드 배달원
	(10) **건물 청소원** (94110)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하고 정돈한다. 【직업 예시】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11) **운송장비 청소원** (94121)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내외부, 바닥, 유리창 등 운송장비를 청소한다. 【직업 예시】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12) **시설장비 청소원** (94122)	운송장비를 제외한 산업설비 및 산업용품을 세척하거나 청소한다. 【직업 예시】 • 산업설비 청소원 • 산업용 장비 세척원 【제외】 • 놀이공원 청소원(94190)
	(13) **쓰레기 수거원** (94142)	종량제봉투로 버린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렉, 분뇨 등을 수거하여 집하소 또는 소각장,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투기를 단속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생활폐기물 수거원 • 대형폐기물 수거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 • 분뇨 수거원 • 무단투기물 수거원 • 불법투기물 수거원
	(14)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94130)	일정구역을 돌면서 공공장소나 인도를 청소하거나 도로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낙엽을 치운다. 가로에 쌓은 눈을 치우거나 모래 및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도로 청소 환경공무관 • 공중화장실 미화원 • 공원 청소원 【제외】 • 풀뽑기 청소원(99999)
	(15) **재활용품 수거원** (94141)	품목별로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품을 수리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재활용 쓰레기 수거원 • 고철 수집원 • 폐지 분류원
	(16) **그 외 청소 관련 종사원** (94190)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17) **아파트 경비원** (9420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거나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 예시】 • 공동주택 경비원 • 빌라 경비원
	(18) **그 외 건물관리원** (942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 순찰원 • 공원 안전요원 • 공원 질서요원 • 별장 관리인 • 건물 경비원(순찰 및 입·출입 관리) • 놀이시설 질서유지원
	(19)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직업 예시】 • 카탈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20)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21) **산불 감시원** (99121)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등 산불 예방 업무나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진화작업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 산불 신고원 • 산림보호 감시원
	(22) **계기 검침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한다. 【직업 예시】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23) **가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가스 점검원
	(24) **주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 및 관리한다. 【직업 예시】 • 주차 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25) **구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 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한다. 【직업 예시】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26)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하거나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을 한다. 【직업 예시】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제외】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 그 외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82309)
	(27) **검표원** (9993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한다. 【직업 예시】 • 버스 검표원 • 승차권 검표원 • 통행료 검표원 • 극장 검표원 • 놀이공원 검표원 • 워터파크 검표원
	(28) **환경 감시원** (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쓰레기 투기,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기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 환경 감시원
	(2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 심부름원 • 사환 • 승하차안내원 • 교통안전도우미

목차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4)	(1)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 (42231)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발 관리사
	(2) 목욕 관리사 (43143)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개인 위생과 관련한 서비스를 한다. 【직업 예시】 • 목욕관리사
	(3) 혼례 종사원 (43220)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신랑·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업무를 한다. 요청 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직업 예시】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4) 노래방 서비스원 (44232)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5)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4423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서비스원이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 PC방 종사원 • PC방 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6) **골프장 캐디** (44292)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7) **주류 서비스 종사원** (45313)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판매 종사자 (대분류 5)	(8) **노점 및 이동 판매원** (53220)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 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한다. 【직업 예시】 • 노점상 • 노점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열차객실 판매원

별첨 8-1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영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Pledge of Non-Employment in (F-4) Restricted Occupations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2쪽 중 1쪽)**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성 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안의 주소 Address In Korea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6-35호, 2026.2.12.)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in occupations restricted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as prescribed in the Announcement of Scope of Restrictions on Job-Seeking Activities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Ministry of Justice Notification No. 2026-35, Feb 12, 2026)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1)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confirm I have been informed that violation of this pledge can lead to punishments including imposition of fines and permission to extend the stay not being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Yet,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in the regional-specialized visa pilot regions who have already applied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tay are excluded.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a public servant in charge under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f 'Disagree', the applicant him/herself should submit all the related documents.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별첨 8-2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중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旅外同胞（F-4）在韩不从事限制范围内职业的声明书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请用韩文或英文填写。**(2쪽 중 1쪽/第1页共2页)**

성명 姓名		국적 国籍		성별 性别	
생년월일 出生日期		휴대전화 手机号码			
여권번호 护照号码		여권 발급일자 护照签发日期		여권 유효기간 护照有效期至	
대한민국 안의 주소 在韩住址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6-35호, 2026.2.12.)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上述本人保证，按照大韩民国《出入国管理法》第18条第1款、《出入国管理法施行令》第23条第3款、《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第27条之2的规定，绝不从事《关于限制持旅外同胞（F-4）滞留资格人员在韩就业范围的告示》（韩国法务部告示第2026-35号，2026年2月12日）中规定的对持旅外同胞（F-4）滞留资格人员限制的就业范围之内的职业。

本人已被告知，如有违反，按韩国《出入国管理法》有关规定，将会受到违规罚款处分、不予延长滞留期限等处罚。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但是，居住于地区特殊类签证试验区的旅外同胞（F-4滞留资格）提前申请办理滞留资格外活动许可的除外。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申请人 :　　*(서명 또는 인/签或章)*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大韩民国00出入国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长 启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按照大韩民国《电子政府法》第36条规定，相关负责公务员在办理本业务的必要范围内共同使用行政信息用于查阅并确认相关负责公务员所需确认事项。　*若不同意，申请人需要亲自提交相关材料。

신청인 申请人	서명 또는 인 签或章	신청인의 배우자 申请人配偶	서명 또는 인 签或章	신청인의 부 또는 모 申请人父或母	서명 또는 인 签或章

별첨 8-3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노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ной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 цев **(F-4)** >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Просим заполнить обещ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или на английском **(2쪽 중 1쪽) (1 страница из 2)**

성명 Полное имя		국 적 Гражданство		성 별 Пол	
생년월일 Дата рождения		휴대전화. Номер телефона			
여권번호 Номер паспорта		여권 발급일자 Дата выдачи паспорта		여권 유효기간 Срок действия паспорта	
대한민국 안의 주소 Адрес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6-35호, 2026.2.12.)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Я, вышеуказанное лицо даю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ной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назначенной 「Уведомлением о сферах ограничени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Уведом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 2026-35, 12 фев 2026),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18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3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 статьей 27-2 Правил исполнения того же закона.

Мн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могут быть наказ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такие как наложение штрафов и отказ в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년 (год) 월 (месяц) 일 (день)

신청인 Заявитель : *(서명 또는 인)(Подпись или печать)*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Директору O O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офиса·филиал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вмест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Я согласен / согласна с тем, что ответств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должностное лицо подтверждает вышеуказанные дела, подтверждённые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ом, посредством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36 「Зако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связи с рассмотрением этого дела * В случае "Несогласия",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лич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신청인 Заявитель	서명 또는 인 Подпись / Печать	신청인의 배우자 Супруг(а) заявителя	서명 또는 인 Подпись / Печать	신청인의 부 또는 모 Отец/Мать заявителя	서명 또는 인 Подпись / Печать

별첨 9

영주(F-5-14)부여 자격 종목 및 등급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제조업 (62)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설계	기사 이상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이상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이상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이상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이상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일반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전자부품장착	산업기사 이상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상
		조선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금속재료	산업기사 이상
		금속가공	기사 이상
		주조	산업기사 이상
		표면처리	산업기사 이상
	전기·전자	전기	산업기사 이상
		전기철도	산업기사 이상
		전자	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이상
	건설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이상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토목	산업기사 이상
	섬유·의복	섬유	산업기사 이상
	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건설업 (17)	건설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철도토목	산업기사 이상
		건축목공	산업기사 이상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상
		조경	산업기사 이상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농업 (5)	농림어업	유기농업	산업기사 이상
		축산	산업기사 이상
어업 (8)	농림어업	수산양식	산업기사 이상
		어로	산업기사 이상
	식품가공	수산제조	산업기사 이상
	건설	잠수	산업기사 이상

목차

별첨 10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지정기간 '25. 7. 1.~'27. 6. 30.)

(가나다 순)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글로벌센터(사단법인)	경기 부천시 경인로 133번길 10, 3	032-344-1412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한빛길 4, 2층	054-742-4336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385번길 20	054-771-8585
경주 YMCA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283	054-743-2888
고려인마을(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062-961-1925
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사단법인)	경남 김해시 호계로 473, 3층	055-322-1365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27, 2층	032-816-9002
너머(사단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7	031-493-7053
대한결핵협회(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1544-5035
대전다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30, 2층	042-543-1191
반딧불나눔복지재단(사단법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65	041-352-0607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 (사단법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8길 23	061-462-8389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02-2229-4909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65, 3층	031-495-2288
영진코리아센터(사단법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0-56	055-344-2345
울산외국인센터(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7	052-291-3133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062-962-3004
제주글로벌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48, 5층	064-727-2114
제주이주민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56, 3층	064-712-1141
하이웃이주민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층	054-772-0691
한국이민재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501호	02-2643-8791
한중사랑교회	경기 부천시 경인로605, 상가동 B201호	02-837-9296
희망36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9-9	070-7701-3636